

중 간 검 사 시 기 연 기 신 청 서

※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선박소유자	① 성 명 (상 호)			
	② 주 소			
③ 선 명			④ 선 박 번 호	
⑤ 선 적 항			⑥ 선 질	
⑦ 총 톤 수			⑧ 용 도	
⑨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중간검사의 종류				
⑩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
⑪ 비 고				
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: (인)				
구비서류 1. 선박검사증서 사본 2.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				

210mm × 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중간검사시기 연기 신청안내

(뒤 쪽)

제출하는 곳	대행검사기관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선급법인)	처리부서	지역별 사무소
수 수 료	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	처리기간	3일
유의사항	☐ 과태료 규정 ○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. ☐ 기 타 ○ 중간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,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.		